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규정

제정 2010. 9. 1.
개정 2012. 3. 1.
개정 2016. 7.20.
개정 2016.10.31.
개정 2017. 3. 1.
개정 2018. 9. 1.
개정 2019.1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청강학원 정관 제47조의2에 의한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직원의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신청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①명예퇴직 신청대상자는 대학의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자 중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단 총장의 명예퇴직에 대한 실시시기, 지급액, 절차(지급절차 포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 ②희망퇴직 신청대상자는 대학의 교직원으로 20년 미만 근속한 자 중 구조조정 등 대학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신청의 제한) ①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징계 요건이 발생하거나 요구 중에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징계 중에 있는 자
-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 3. 타 기관이나 산업체에 임용 예정인 자
- 4. 그 밖에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5. 임용계약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②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의 허가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 ①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명예(희망)퇴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한다.
- ③교원 및 직원의 인사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④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위원회는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대상자 심의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제5조(공고) 총장은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대상범위, 인원, 신청기간 등을 정

하여 매학기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의 신청)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제5조에 의거 공고한 기간 내에 별첨<서식1>의 명예(희망)퇴직신청서를 각각의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제6조2(수시퇴직) (삭제)

제7조(심의 및 결정) ①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제6조에 의하여 퇴직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마감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허가 대상자를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은 매학기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허가 대상자를 심의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고려하며, 대학의 이익을 위해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 1. 계속 재직 시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 2. 인력 수급 계획
- 3.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총장은 위원회로부터 퇴직대상자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산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퇴직대상자를 결정한다.

⑤(삭제)

⑥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대상자의 수가 예산 범위 이상일 경우에는 근속연수 순으로 정한다.

제8조(결정 통지) 퇴직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9조(사직원 제출) 퇴직대상자는 퇴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한다.

제10조(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수당지급) ①명예퇴직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 산정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이 결정된 자가 통보 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일 업종으로 이직할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한다.

제11조(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총장은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수당 지급 결정 통지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자로 시행한다.

[별표 1]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 산정표

구 분	정년 잔여 기간별 대상자	퇴직 수당	근무기간별 지급율
명예퇴직	1년 이상 5년 이내인자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50% × 정년 잔여월수	각 산정금액의 100%
	5년 초과 10년 이내인자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50% × { 60 + (정년 잔여월수 - 60) / 2 }	
	10년 초과인자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50% × { 60 + (120 - 60) / 2 }	
희망퇴직	별도로 산정함		

※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우리대학 연봉지급 구성내역 중 기본급에 포함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본봉'을 기준으로 한다.

